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22.

발 의 자 : 박용진 · 송재호 · 김의겸
윤준병 · 강병원 · 유정주
이은주 · 심상정 · 이동주
김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호사가 소송행위 등 어느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,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‘쌍방대리 금지’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형 법무법인, 법무조합 등을 중심으로 약정 시 현행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호에 대한 예외를 동의받거나,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다가 다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,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조력한 뒤 소송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‘쌍방대리 금지’를 형해화하는 사건 수임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전 단계로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예비적 위임관계가 성립하여 전형적인 쌍방대리 금지 규정

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.

이에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,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제4호·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수임제한)”을 “(수임제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위한 소송 행위 등 관련 직무수행을 한 다음,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

5.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대리한 다음,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

④ 변호사는 제1항에 따라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수임하고 있는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등 관계 법률사무에 대한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법률상담 등 관계 법률사무가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음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수임제한)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31조(수임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위한 소송행위 등 관련 직무수행을 한 다음,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
<신설>	5.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대리한 다음, 동일 쟁점을 포함하는 형사사건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변호사는 제1항에 따라 사

④ · ⑤ (생략)	<u>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수임하고 있는 사건 위임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등 관계 법률사무에 대한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법률상담 등 관계 법률사무가 직무윤리에 저촉되지 않음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